|  |  |
| --- | --- |
| 별첨 | 관련 양식 |

**[붙임 1]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 | |  | | | |  | | |  | | | | | 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
|  |  | | | | | | **지원서** | | | | | | | | | | | | | 접수번호 | | | | | 미기재 | | | | |  | |
|  |
| 지원국가 | | 1지망 | | |  | | | | |  | |
| 2지망 | | |  | | | | |
|  |
| 지원분야 | | | | |  | | | | |  | |
|  |
| 지원직종 | | | | |  | | | | |  | |
|  |  | |  | | | |  | | |  | | | | | 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
|  | ①  성 명 | | 한 글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 생년월일 | | | | | | | | | |  | |
|  |  | |
| 영 문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 YYYY.MM.DD. | | | | | | | | | |
|  |  | |
|  | ②  연락처 | | 휴대전화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 | |
|  | 이메일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 | |
|  | ④  외국어  (특수외국어 포함) | | 영어 | | | | 상 중 하 | | | | | | ⑤  취미 및 특기 | | | | | | 취미 | | | | | 특기 | | | | | |  | |
|  |  | | | | 상 중 하 | |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|  | |
|  |  | | | | 상 중 하 | | | | | | ⑥취약계층  (증빙서류제출) | | | | | | 취약계층대상 | | | | | | | | | | |  | |
|  |  | | | | 상 중 하 | | | | | | □대상 □비대상 | | | | | | | | | | |  | |
|  | ⑦신체정보  (주요 병력 및 신체이상부위가 있을 경우 작성) | |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 | | |
| ⑧  봉사단체  활동유무  (국내외) | | | 단체명/  기간/  업무 |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 |  | |  | | | |  | | |  | | | | | 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
|  | |  | | |  | | |  |  | | |  | | |  | |  | | | | | |  | | | |  |  | | |
|  | | ⑨  자격 및  면허명 | | | 발행일 | | | | 발급기관 | | | | | | | | | 자격(면허)  번호 | | | | | 비고 | | | | |  | | |
|  | |  | | |  | | | |  | | | | |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 | | |  | | | |  | | | | |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 | | |  | | | |  | | | | |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 | | |  | | | |  | | | | |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⑩  경력사항 | | | 직장명 | | | | 근무기간 | | | | | 근무기관  /근무부서 | | | | | | | 직위 | | 담당업무 | | | | |  | | |
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| |  | |  | | | | |  | | |
|  | |
|  | |
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| |  | |  | | | | |  | | |
|  | |
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| | 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| | 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| |  | | | | |  | | | | | | |  | |  | | | | |  | | |
|  | | ⑪  학력 | | | 전공 | | | | | | 입학년월  /졸업(예정)년월 | | | | | | | | | | 졸업  구분 | | 최종  학년 | | | 최종  학력 | |  | | |
|  | |
|  | |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 | |  | | |  | |  | | |
|  | |
|  | |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 | |  | | |  | |  | | |
|  | |  | |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 | |  | | |  | |  | | |
|  | |  | |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 | |  | | |  | |  | | |
|  | |  | | | | | |  | | | | | | | | | |  | |  | | |  | |  | | |
|  | | ⑫  병역사항 | | | 역종 | 군별 | | | 병과 | | 계급 | | | | 군번 | | | 주특기 | | | | | 복무  기간 | | | 미필 | |  | | |
|  | |  |  | | |  | |  | | | |  | | |  | | | | |  | | |  | |  | | |
|  | |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 년 월 일  지원자 (인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 | | |

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, 지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.

**자기 소개서**

|  |
| --- |
| 1.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 |
| 2.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 또는 변화는 무엇입니까? |
| 3. 지원직종과 관련하여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? |
| 4. 지원직종과 관련있는 교육, 훈련, 연구 등의 경험과 파견국에서 그 경험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? |
| 5. 해외봉사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|
| 6. 해외봉사활동을 마친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? |

**[붙임 2] 개인정보 수집/활용 동의서**

**개인정보 수집/활용 동의서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글로벌발전연구원은(는) KOICA 2022년 르완다, 베트남 청소년개발분야 프로젝트봉사단 선발 전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 **1. 개인정보의 수집내용 및 이용목적**  제공하신 정보는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선발 과정 중 아래 사항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. 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**구분** | **항목** | **목적** | | 1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소속 | 제공자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| | 2 | 학력 및 경력, 자격사항 | 우대사항에 대한 확인 |   **2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**  - 개인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·활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.  -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,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 안전하게 파기됩니다.  **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**  제공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목적 내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 **제공받는 자** | **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** | **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** | **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** | **제공 근거** | | 한국국제협력단 | 봉사단 모집선발 업무에 따른 자료 제공 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소속기관/직위, 학력 및 경력, 자격사항 | 처리목적  달성 시까지 | 정보주체의 동의 |   **4.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**  - 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 -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실 경우, 원활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|
| **<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>**  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: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  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 제3자 제공에 동의함.  년 월 일 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 |

**[붙임 3]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문**

**2022년 코이카 프로젝트봉사단 파견 사업**

**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**

※ 하기 기준 해당자는 1차 지원 합격 후 지정된 제출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**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**“수급권자”** 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“**차상위계층”** |
| **제출서류** | 1. 수급권자  -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(주민자치센터 발급)  2. 차상위계층 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 자활근로자확인서(주민자치센터),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(주민자치센터) 중 1부 |

**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  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장애인증명서 1부(주민자치센터 발급) |

**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 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 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 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  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  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  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
**4. “다문화가족지원법”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 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3. "아동ㆍ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국적취득증명서 1부 (국적 취득시)  2.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 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
**5. 고용노동부 「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」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 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1. "장기실업자"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구직등록확인서 2.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|

**6.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“취업취약계층”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 분** | **첨 부 서 류** | |
| 배우자  無 | •가족관계등록부  •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자에 한) | |
| 배우자  有 | 가출․행방불명 | 실종신고서 |
| 장애 |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|
| 질병 | 의사의 진단서 |
| 군복무 | 복무확인서 |
| 학교 재학 | 재학증명서 |
| 교도소 입소 |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 |
|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|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|
| 이혼소송 제기 | 이혼소송확인서 |
| 기타 가족 생계 부양 | 통․반장의 확인서(검토) |

**7. 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2.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3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|

**8.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ㆍ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ㆍ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 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국가유공자(자녀) 증명서 |

**9. “아동복지법”에 해당하는 자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관련법** |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5. "아동복지시설"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  제14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|
| **제출서류** | 1.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 2. 주민등록등본 1부 |

**[붙임 4] 질병 병력 및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**

<개정 2010.6.29, 2013.04.04., 2014.11.21., 2015.09.11., 2021.10.22.>

[제목개정 2015.09.11., 2021.10.22.]

**질병ㆍ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**

[질병·병력 확인]

1.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.( )

2. 본인은 \_\_\_\_\_\_\_\_\_\_\_\_\_\_을(를) \_\_\_\_\_\_\_\_\_\_\_부터 \_\_\_\_\_\_\_\_\_\_까지 치료를 (받는 중이며/받았으며)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.

3. 기타 특이사항(필요 시 기재):

4.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․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.

[결격사유 부존재 확인]

1.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.( )

2.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서명 또는 (인)

**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**

**<질병·병력,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 예시>**

|  |
| --- |
| **질병·병력,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** |
| [질병·병력 확인]  1.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.(**∨**)  2. 본인은 \_\_\_\_\_\_\_\_\_\_\_\_\_\_을(를) \_\_\_\_\_\_\_\_\_\_\_부터 \_\_\_\_\_\_\_\_\_\_까지 치료를 (받는 중이며/받았으며)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.  3. 기타 특이사항(필요 시 기재):  4.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․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.  [결격사유 부존재 확인]  1.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.(**∨**)  2.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 |
| **질병·병력이 있는 경우** |
| [질병·병력 확인]  1.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.( )  2. 본인은 **고혈압**을(를) **2019년 8월**부터 **2021년 12월**까지 치료를 (받는 중이며/**받았으며**)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.  3. 기타 특이사항(필요 시 기재): **청각장애 6급 판정받음**  4.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․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.  [결격사유 부존재 확인]  1.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.(**∨**)  2.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. |

**<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 참고 자료)>**

국가공무원법

[시행 2022. 1. 21.] [법률 제18308호, 2021. 7. 20., 타법개정]

인사혁신처(인사혁신기획과-총괄) 044-201-8314, 8315

인사혁신처(복무과-복무) 044-201-8445

인사혁신처(인사혁신기획과-임용) 044-201-8295

인사혁신처(인재정책과-채용) 044-201-8204

인사혁신처(복무과-징계) 044-201-8434

**제3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4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>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**[붙임 5] 질병관리 서약서 및 WFK 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**

**[별지 제2-3호 서식] 질병 관리 서약서**

<신설 2018.12.28.>

|  |
| --- |
| **질병 관리 서약서**  성명 : 생년월일 :  파견국 : 파견분야 :    위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 합니다.  1. 본인은 *(질병명)* (으)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검사수치가 정상적·안정적이므로, *(파견 분야)* 단원으로 파견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 한다.  2. 본인은 *(질병명)* 관리를 철저히 하고, 질병 관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며, 주기적(반기별)으로 진단, 처방 및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협력단에 제공한다.  3. 현지에서 건강 악화 및 검사 결과가 정상수치 외 범위일 경우 현지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본국으로 귀환(계약해지) 한다.  4. 파견 전 가지고 있는 *(질병명)* 에 따른 보험 보상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*(질병명)* 관련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 한다.  5. 상기 명시된 질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또는 중증 질병이 발생할 경우 “본인 귀책”으로 간주하며 협력단은 책임지지 않음을 숙지한다.  6. 동 서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의료비 개인부담과 관련해 협력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 년 월 일  서약인 (인)  보호자 (인)  **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** |

**[별지 제22호 서식]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**

<신설 2008.11.11., 2017.12.22., 2018.12.28., 2020.10.19.>

**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**

1. 일반결함

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(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서, 해당 암 분야 전문의(상급종합병원)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) <개정 2020.10.19.>

나.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

다. 난치성 사상충병(絲狀蟲病)

라.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(수축기 140mmHg/ 확장기 100mmHg 이상)

마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

2. 비강(鼻腔)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

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
나.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

3. 치아 계통

가. 아래턱관절 강직(强直), 저작근(咀嚼筋)의 질환 또는 악골(顎骨)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

나.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

다.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

4. 흉부

가.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

다.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.중증만성기관지염.중증 기관지확장증, 중증 폐기종,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

5.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가. 심부전증(心不全症)

나. 발작성 빈맥(150회/분 이상) 또는 기질성 부정맥

다. 방실전도장애(房室傳導障碍)

라. 동맥류

마. 유착성 심낭염

바. 관상동맥질환

사. 폐성심(肺性心)

6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
가.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(脾機能亢進症)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(전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,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)

7. 생식비뇨기 계통

가. 중증 요실금

나. 진행성 신기능(腎機能)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(腎疾患)

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(腎結核) 또는 생식기결핵

라.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(腎症候群)

8. 내분비 계통

가.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(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,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(상급종합병원)의 소견서 미제출자) <개정 2020.10.19.>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

다.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(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)

라.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

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(식후 200mg/dL 이상)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

9. 혈액 또는 조혈 계통(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가.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

나. 혈소판 감소 자색반(紫色斑)

다. 재생불량성 빈혈

라.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)

마. 진성적혈구 증가증

바. 백혈병

10. 신경계통

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
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
다.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,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
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
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
2) 외상성 신경질환

3) 말초신경질환

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
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
6) 뇌전증(腦電症)

11. 사지(四肢)

가. 보조 장구(裝具)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

12. 귀

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

13. 눈

가.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.2 이하인 경우

나. 두 눈의 시야협착(視野狹窄)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

다.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

라. 중심 시야 20° 이내의 복시(複視)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(眼球振盪)

마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

14. 정신 계통

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

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

다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

라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

15. 기타

가. 뇌,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

- 위험도 평가지표(나이, 유전적인자, 몸무게, 흡연, 혈압, 운동, 당뇨, 혈액 및 영상검사 등)

나.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

다. 낭종(3cm), 근종(2-3cm이상), 담낭 용종(1cm이상)의 경우 전문의의 (상급종합병원)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<개정 2020.10.19.>

-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